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737
----------	-----

2024. 10. 18.(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7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민영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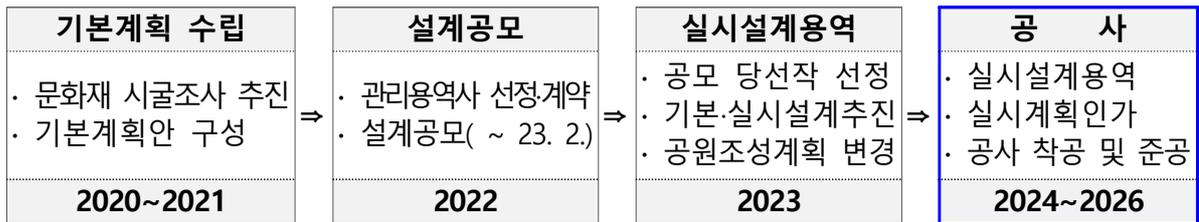
### 가. 제안사유

- 청주시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충혼탑 주변을 추모와 문화, 예술이 어울어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빛낼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
- 위 치 :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4,615㎡
- 총사업비 : 70억(시비 100%)
  - 공사비(60억), 용역비(9억), 공사 감리비 및 부대비(1억)
- 사업내용 : 추모,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원 조성
- 주요시설
  - 충혼탑(H=13.1m), 추모벽(H1.4m×L47.48m), 잔디마당(938㎡), 숲속 산책로(210m), 커뮤니티스탠드(6단×90m), 건축(다목적실 등 481㎡)
- 공사 추진과정



### □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건축물
  - 규 모 : 연면적 481㎡(지상1층)
  - 용도·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시설배치(안)

구분	합계	다목적실 /전시실	창고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방송실	화장실	창고	기타
면적 (㎡)	<b>481</b>	173.45	20.57	50.18	44.23	12.82	16.15	47.36	29	87.24

○ 시설물

연번	구분	규격(mm)	재질	단위	수량
1	층혼탑	H1310	철근콘크리트구조/ (표면)화강석판석	식	1
2	메모리얼가벽	W600×H1400×L47480	알루미늄시트/ 화강석판석	식	1
3	잔디마당계단A	W10800,13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개소	1
4	잔디마당계단B	W10800,12단		개소	1
5	잔디마당계단C	W1800,12단		개소	2
6	잔디마당스탠드	W17200,6단		개소	2
7	커뮤니티스탠드A	W300×H450~600,7단		식	1
8	커뮤니티스탠드B	W300×H300,3단		식	1
9	진입계단A	W12000×22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식	1
10	진입계단B	W2400×22단		식	1
11	진입계단C	W2400×22단		식	1
12	진입계단D	W2400×22단		식	1
13	데크산책로	W2000×L221210	천연데크재	식	1
14	경사로	W1700×L50200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판석	식	1
15	조형의자A	W4200×H450~800	집성목재	개소	3
16	조형의자B	W3000×H450~800		개소	8
17	가벽A	H900xL1800	화강석통석	개소	1
18	가벽B	H900xL2100		개소	1
19	가벽C	H900xL2300		개소	1
20	가벽D	H750xL1500		개소	1
21	가벽E	H600xL3900		개소	1
22	가벽F	H450xL1200		개소	1
23	가벽G	H450xL1200		개소	1
24	엘리베이터A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5	엘리베이터B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6	엘리베이터C	W1600xD1700	17인승/1,275kg	개	1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동의안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청주시가 복합 휴식공원 조성 중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본 동의안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공유재산은 서원구 사직동 604-87, 88, 89번지 소재, 24,615㎡ 규모 도유지로, 우리 도는 `22. 11. 1. ~ `27. 10. 31. 5년간 청주시에 무상사용을 허가하였고,\* 허가기간 중 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계획하는 경우, 사전협의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요청 조치계획 (`22. 10. 31., 복지정책과-24941)

- `24. 4. 청주시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24. 10. 2. 우리 도는 청주시와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합의서”를 작성함.

- 동 합의서에 따르면 공원 건립 주체는 청주시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청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본 동의안의 도유지에는 지상권 등 어떠한 사권도 설정할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구조물 철거하고 토지는 원래 상태로 충청북도에 반환하나, 합의에 따라 소유권을 우리 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청주시 계획에 따라 복합 휴식공원이 조성되면 도민들에게 충혼탑의 존재 가치를 부각하고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공원 조성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본 동의안의 도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지속적인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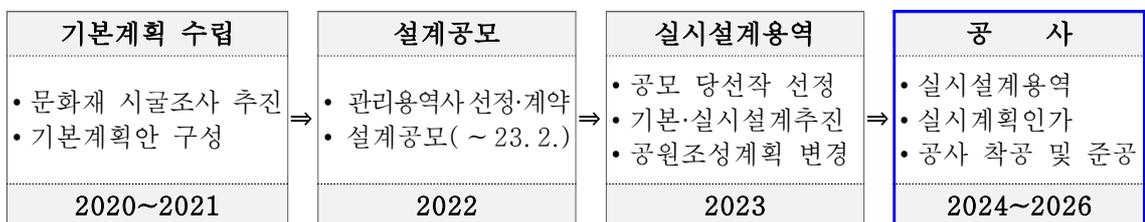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청주시는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충혼탑 주변을 추모와 문화, 예술이 어울어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순국선열들의 공헌과 희생을 빛낼 공간으로 업사이클링 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2026년
- 위치 : 서원구 사직동 604-87번지 일원
- 사업규모 : 24,615m<sup>2</sup>
- 총사업비 : 70억(시비 100%)
  - 공사비(60억), 용역비(9억), 공사 감리비 및 부대비(1억)
- 사업내용 : 추모,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 휴식공원 조성
- 주요시설
  - 충혼탑(H=13.1m), 추모벽(H1400×L47.48m), 잔디마당(938m<sup>2</sup>), 숲속산책로(210m), 커뮤니티스탠드(6단×90m), 건축(다목적실 등 481m<sup>2</sup>)
- 공사 추진과정



### 3. 영구시설물 축조 계획

○ 건축물

- 규 모 : 연면적 481m<sup>2</sup>(지상1층)
- 용도·구조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시설배치(안)

구분	합계	다목적실/전시실	창고	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방송실	회장실	창고	기타
면적(m <sup>2</sup> )	481	173.45	20.57	50.18	44.23	12.82	16.15	47.36	29	87.24

○ 시설물

연번	구분	규격(mm)	재질	단위	수량
1	층혼타	H1310	철근콘크리트구조/ (표면)화강석판석	식	1
2	메모리얼가벽	W600×H1400×L4748 0	알루미늄시트/ 화강석판석	식	1
3	잔디마당계단A	W10800,13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개소	1
4	잔디마당계단B	W10800,12단		개소	1
5	잔디마당계단C	W1800,12단		개소	2
6	잔디마당스탠드	W17200,6단		개소	2
7	커뮤니티스탠드A	W300×H450~600,7 단		식	1
8	커뮤니티스탠드B	W300×H300,3단		식	1
9	진입계단A	W12000×22단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	식	1
10	진입계단B	W2400×22단		식	1
11	진입계단C	W2400×22단		식	1
12	진입계단D	W2400×22단		식	1
13	데크산책로	W2000×L221210	천연데크재	식	1
14	경사로	W1700×L50200	콘크리트기초/ (표면)화강석판석	식	1
15	조형의자A	W4200×H450~800	집성목재	개소	3
16	조형의자B	W3000×H450~800		개소	8
17	가벽A	H900xL1800	화강석통석	개소	1
18	가벽B	H900xL2100		개소	1
19	가벽C	H900xL2300		개소	1
20	가벽D	H750xL1500		개소	1
21	가벽E	H600xL3900		개소	1
22	가벽F	H450xL1200		개소	1
23	가벽G	H450xL1200		개소	1
24	엘리베이터A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5	엘리베이터B	W1800xD1600	17인승/1,275kg	개	1
26	엘리베이터C	W1600xD1700	17인승/1,275kg	개	1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